
VII. 생명보험신탁의 경우

생명보험신탁은 사망보험계약상 사망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을 뜻한다.²¹⁷⁾ 보험계약자가 신탁회사를 직접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²¹⁸⁾ 실무상으로는 일단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또는 그의 상속인으로 지정해 놓은 뒤, 그 지정보험수익자가 다시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되어 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²¹⁹⁾ 결과적으로 생명보험신탁에서는 신탁회사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보험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수익을 누리게 되는 자는 -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 신탁수익자가 된다. 이러한 생명보험신탁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생명보험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자가 자유롭게 ‘신탁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로 치환해 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²²⁰⁾ 아래에서는 생명보험신탁이 현행법상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지금까지 살펴 본 논의들이 생명보험신탁의 경우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본다.

생명보험신탁에서 보험수익자는 신탁회사이지만, ‘실질적’ 보험수익자는 신탁수익자이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와 관련한 보험법의 법리가 신탁수익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²²¹⁾ 가령, 신탁회사인 보험수익자가 아니라 신탁수익자가 고의

217) 한기정(2009), p. 83

218) 이러한 유형의 생명보험신탁이 허용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한기정(2009), pp. 112~113 참조

219) 김상훈(2017), pp. 12~18 참조

220)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뒤, **그 보험수익자가** 위탁자가 되어 신탁회사와 자기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생명보험신탁이 적절 한지는 의문임. 이 경우에도 신탁계약상 신탁자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보험수익자가 위탁자가 되어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려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권을 포기하여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처분권이 보험수익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에 의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732조의2). 또한 타인의 생명보험의 경우, 신탁회사인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지 않고 신탁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상법 제731조).

보험수익자 확정과 관련하여 본문 V.에서 살펴 본 논의들은 생명보험신탁의 신탁수익자 확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 ① 신탁수익자가 실질적 보험수익자인 점, ② 신탁법에 신탁수익자 확정에 관하여 별도의 조문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생명보험신탁 수익자의 확정시에도 상법 제733조를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다만 보험사고 발생 후 신탁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신탁수익자 확정문제는, 신탁법 제57조 제2항이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처음부터 수익권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본문 V. 5와 같은 복잡한 논의를 할 필요없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수익자의 수익권 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사료된다.

유류분에 관해서는 ① 신탁수익자가 받은 이익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신탁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것인지, ②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신탁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것인지,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 당시 갖는 해약환급금채권 상당액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 신탁수익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것인지, ④ 신탁재산으로 이전된 보험금청구권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것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필자는 기본적으로 ‘신탁수익자가 받은 이익’ 또는 ‘보험금청구권’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결국 ①과 ④ 중 무엇이 타당한 방법인지 문제되는데, 이는 결국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신탁의 경우 유류분반환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인정할 것인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벅찬 주제이다. 생명보험 신탁에서 수탁자인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신탁재산(보험금청구권)

221) 본문 V. 2. 나. (3)에서 살펴 본 ‘수익자후보자’의 법적 지위도 참조

을 취득하므로, 생명보험신탁에서 유류분반환의 문제는 - 유언대용신탁보다는 - 유언신탁과 그 문제상황이 비슷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①, ④ 방법이 모두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된다.²²²⁾

222) 유언신탁에서 유류분반환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최준규(2018), p. 1154~1158 참조. 김상훈(2017), pp. 35~39는 생명보험금청구권의 고유재산성을 이유로 ①, ④ 모두 허용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생명보험신탁에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재산은 없다고 - 따라서 유류분은 문제될 수 없다고 - 주장함. 그러나 이미 본문 VI.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주장은 - 실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 명백히 부당함